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6. 15)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행정팀장 이강윤)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 894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이 제12조의 2제1항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4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7조).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의거”를 “따라”로 하고, “지역안”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재활용이행등”을 “재활용이행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폐기물중”을 “폐기물 중”으로 하고, “보관방법등”을 “보관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검사등”을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00호
의결 년월일	2010. 6. 18 (제161회)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 894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이 제12조의2제1항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4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7조).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의거”를 “따라”로 하고, “지역안”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재활용이행등”을 “재활용이행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폐기물중”을 “폐기물 중”으로 하고, “보관방법등”을 “보관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에”를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검사등”을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생 략)</p> <p>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u>관할구역</u>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제3조 (자원재활용 <u>기본계획수립</u>)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u>관할구역</u>의 특성을 고려한 <u>지역</u>안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u>에 따라</u>- ----- ----- ----- ----- ----- ----- <u>관할구역</u>----- -----.</p> <p>② -----<u>에 따라</u> ----- ---- <u>각 호</u>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 <u>기본계획</u>의 수립) -----<u>에 따른</u> ----- <u>따라</u> -----<u>지역</u> ----- ----- ----- -----.</p>

현행	개정안
<p>제4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 할 수 있다.</p>	<p>제4조(----- 재활용이행 등)-----제12조2제1항에 따른 ----- -----폐기물 중----- -----보관방법 등----- -----.</p>
<p>제5조 (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p> <p>①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p>	<p>제5조(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p> <p>① -----에 따른 ----- -----각 호의-----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 ----- -----</p> <p>② -----에 따른 ----- ----- -----.</p>

현행	개정안
<p>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생략)</p> <p>② 제1항 <u>규정에 의한</u>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p> <p>③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u>규정에 의하여</u> 수당·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 (보고 및 <u>검사등</u>)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u>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성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에 따른----- ----- -----제14조----- -----.</p> <p>③ ----- ----- -----에 따라 ----- -----범위에서-----.</p> <p>제7조(보고 및 <u>검사 등</u>) ① ----- -----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 ----- -----.</p>

현 행	개 정 안
<p>1. <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2. <u>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에 따라----- ----- -----.</p> <p>③ <u>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p> <p>제8조(시행규칙) ----- <u>필요한</u>----- -----.</p>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0.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제27조에 따른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폐기물의 관리·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시책의 개발·자문 및 추진사항의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의 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